

교원산업체현장연수운영규정

제정 2006. 6.

개정 2018.1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전임교원의 산업체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원산업체현장연수’란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내용과 변화를 습득케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산업체현장연수는 우리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연수산업체의 범위) 연수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동 유관업체
2. 학생 현장실습업체
3.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중기업 이상의 업체
4. 기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제5조(연수신청) 산업체현장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연수개시 15일전까지 그룹웨어 전자결재 - 산업체 현장연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상신한다.

제6조(연수결과보고) 산업체현장연수를 수료한 교원은 연수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수결과보고서(별첨 연수이수증명서)를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룹웨어 전자결재 - 산업체현장연수결과보고서에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상신한다.

제6조의 2 (해외소재 산업체 현장연수) ① 제4조 내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습득하고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 소재 산업체 현장 연수(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수기간 중 전임교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산업체 현장 연수를 해야 하는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신청 대상 : 근속연수 3년 이상인 전임교원(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연수 기간 : 동·하계 방학기간 중으로 제한
3. 신청방법 : 연수신청서를 제출하며, 원장추천서 및 해외 소재 산업체 및 연수기관과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또는 약정서 초안)을 반드시 첨부(단, 선정된 후에는 날인 또는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4. 선정 방법 : 총장이 지정하는 보직교수 회의를 통해 선정
5. 연수기간 중 급여 : 지급
(단, 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함)
6. 신청 제한 : 동일 교수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음(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할 수 있음)

- ③ 이 조항에 의해 해외 소재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한 교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연수 종료 후 즉시 우리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
 2. 연수기간 도중에 귀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복귀 후 1개월 이내 소속 스쿨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연수결과보고서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복귀 후 3년 동안 우리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 단, 학교 규정에 의해 징계, 해임, 재임용 탈락,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1호 내지 4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향후 해외소재 산업체 현장연수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은 해외 소재 산업체 현장 연수 교원이 연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연수의 취지를 훼손하였거나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외 소재 산업체 현장 연수를 중단하게 하거나 향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제7조(보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교원 산업체현장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